

#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입시 특별회계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0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7. .  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개정이유

가.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청구 신청이 매년 접수되고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문 수정(안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)  
나. 특별회계 존속기한 변경(안 제2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3. 6. 14. ~ 2023. 6. 26. (12일간)

- 「\*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

기간 단축

\* 제5조제2항제1호: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(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)로서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

\* 제5조제2항제2호: 그 밖에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 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동의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원안동의

## 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**

##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117조” 를 “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” 으로, “의하여” 를 “따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8년 12월 31일” 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경우” 를 “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한다.

제5조 중 “하남시도시계획조례 제13조” 를 “「하남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3조” 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「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도시계획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도시계획과장
	팀장 직위·성명	도시계획팀장 정제교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서지호 (031-790-5255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<u>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및 미보상 토지 보상 임시특별회계(이하 “보상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4조(용도)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<u>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제13조의 규정</u>에 의한다.</p>	<p>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----- ----- <u>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</u>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.</p> <p>----- <u>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</u> ----- -----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용도) -----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----- ----- <u>「하남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3조</u>-----.</p>

제6조(준용) 보상특별회계의 예산  
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 
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하  
남  
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 
따른다.

제6조(준용) 보상특별회계의 예산  
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 
「지방재정법」과 같은 법 시행  
령 및 「하남시 회계관리에 관  
한 규칙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  
다.